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91 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이용우·임미애·김기표

송재봉 · 김남근 · 이수진

송옥주 · 양부남 · 김영환

이광희 · 허성무 · 김 윤

김주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,845 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, 전년도(2022년)보다도 4,37 3억 원이나 증가했음.

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.7%가임금체불 경험이 '있다'고 답했으며,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%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.

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'사정이 어렵다' 며 기다려달라는,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 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.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,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,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,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,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).
- 나. 「근로기준법」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(3년)를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(5년)와 일치하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(안 제42조 및 제49조).
- 다.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(안 제43조의4 신설).
- 라.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 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: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
- 2.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: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
-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 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3조의4(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)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등 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 - 1.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
 - 3.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임금등의 체불 기간・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
 - 2.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
 - 3.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
 - 4. 사업주의 재산상태
 -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제49조 중 "3년간"을 "5년간"으로 한다.

제10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문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자가 피해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당시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,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)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이자) ① ----- 다음 각 호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만 해당된다)의 전부 또는 일 경우 그 다음 날-----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 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에 따 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 <신 설> 1.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 다):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이 되는 날 2.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<신 설> 하는 임금: 제43조제2항에 따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 사용 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 -----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라 정하는 날

-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 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근로자 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 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 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.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4(체불임금등에 대한 지 급청구)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등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」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 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 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

있다.

- 1.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
- 2.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
- 3.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 금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임금등의 체불 기간・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
- 2.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 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
- 3.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 급액
- 4. 사업주의 재산상태
-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.

제49조(임금의 시효) 이 법에 따 제49조(임금의 시효) -----

른 임금채권은 <u>3년간</u>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
제109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<단선신설>

<u>5년간</u>
제10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2
다만, 본문에
· <u>기년, 년년 "</u>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자가 피
해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
또는 공탁하지 아니하고 있는
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